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사실장(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우리 구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실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10. 26.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직위	임용직급	채용인원	주요업무내용	비고
감사실장	지방행정사무관 (행정5급)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 (개방형5호)	1명	- 감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산하기관 감사에 관한 사항 - 공직기강 확립, 청렴·일상감사에 관한 업무 - 비위사실 조사 및 징계 제청, 공무원 관련 청원·진정조사 - 각종 민원사항(진정, 청원 등)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총괄 - 인권업무에 관한 사항 등	

2 임용(계약)기간

- 임용(계약)기간 : 2년
-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임용신분

- 민간인의 경우는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계약기간 동안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 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일)

○ 공통요건

구분	내용	비고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응시연령	면접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만18세 이상인 자	
성별	제한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거주지	제한없음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5.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경력요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아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이하 “감사 관련 업무” 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대통령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행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최종합격자 발 표
2026.11. 6.(금) ~2026.11.12.(목) (5일간)	2026.11.23.(월) 예정 ※ 면접 일정 및 장소 구청 홈페이지 공고	2026.11~12월 중 예정	2026.12월 중 예정

- ※ 공고 및 발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홈페이지(www.michuhol.go.kr) 고시공고에 게시
- ※ 응시자가 없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재공고
- ※ 상기 일정은 재공고 등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형식요건 심사(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7배수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적격성 심사 (1차 형식적 요건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요건 검증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 능력, 공직에 대한 가치관 등을 심사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11. 6.(금) ~ 11.12.(목) [5일간 ,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총무과 인사팀 (본관 2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접수누락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채용 담당자(032-880-4117)에게 전화로 고지하여야 함
 - 봉투겉면 “미추홀구 감사실장(개방형직위) 응시원서” 문구 표기
 - 주소: (22169) 인천 미추홀구 독정리로95(송의동), 미추홀구 총무과 인사담당 앞

- 응시수수료 동봉(우체국에서 해당금액 우편통상환증서로 교환 증서 받는 자 미기재)
 - ※ 현금 및 정부수입인지 제출 불가, 우편통상환 발행은 금융업무시간 내에만 가능함에 유의
- 우편 접수 시 응시표는 이메일 발송하오니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면접시험 시 출력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8

제출서류

(모든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2.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본인 자필로 작성)
 - 수수료 - 5급/가급 이상: 1만 원
 - ※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수입증지(인증기증지)를 응시원서에 첨부/ 종합민원실 1번 창구
 - ※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3.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4.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자유롭게 기술하되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6.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7.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급(직위), 근무기간,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함.(발행기관의 직인,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
 - ※ 제출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 근무인정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받아 기재 제출
 - ※ 비상근·비정규직·시간선택제 근무 경력은 반드시 증명서상에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예) 00업무, 주 20시간 근무
 - ※ 증명서 서식에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 없을 경우 수기 확인(발급확인자 서명 날인) 받아 제출 가능
 - 비상근·비정규직·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예) 주당 근무시간을 환산하여 2,080시간을(52주*40시간) 만족해야 1년으로 인정함
 - 공공기관이 아니거나 기업의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등록증·허가증 등 기업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첨부할 것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에서 출력 가능)
9. 해당분야 자격증, 면허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1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11.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12.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본인 의견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13. 기타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
(외국어및 정보화능력 관련 자격증, 상훈, 연구실적 등) / 논문, 저서 등은 A4용지 3매 이
내의 국문요지 첨부

※ 서류제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하고, 발행기관(회사)의 관인
(법인 인장) 날인 필요
- 방문접수 시 원본 제출, 우편접수 등 사본 제출할 경우 최종면접시 원본 지참
-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졸업,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

9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 [별표13] 제5호의 나목에서 정한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

(단위: 천 원)

구분(연봉등급)	연봉한계액	상한액	하한액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93,801	53,316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예산 범위 내)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희망 시 고용보험 가입 가능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따라 급여 결정

-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안에 반환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 응시수수료의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응시수수료의 과오납 금액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및 응시자가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 시험 실시일 전(접수마감일 3일 초과 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 합격결정 후에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총무과 인사팀(032-880-41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인적사항

성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예정직급	비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	☐ 제출 ☐ 미제출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 제출 ☐ 미제출
6.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제출 ☐ 미제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제출 ☐ 미제출
8. 자격·면허증 사본	☐ 제출 ☐ 미제출
9.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 제출 ☐ 미제출
10.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을 포함), 행정정보사전이용동의서	☐ 제출 ☐ 미제출
11.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본인 의견서)	☐ 제출 ☐ 미제출
12.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해당자)	☐ 제출 ☐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응시원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감사실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수입증지 첨부란 (응시 수수료 10,000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감사실장 개방형직위)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사위원장 (인)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공고문에
게시된 장소 및 시간에 맞춰 입실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불이익은 응시자가 책임집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 시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응시자 “**본인의 필체**”로 빠짐없이 작성하되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예) 감사실장(개방형직위)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미추홀구청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부착
※ 응시수수료 : 5급(상당) 10,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원서를 제외한 서류는 문서작성프로그램(워드프로세서)으로 작성 가능

이 력 서

가. 공 통 사 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감사실장(개방형직위)	
성명			생년월일	
응시자격 요건	예시)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병역	해당없음 또는 군필(군복무) 사항 기재			

나. 응 시 자 격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00광역시(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00월)	행정7급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00월)	대리	
학 위 ※해 당 자 기 재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박사	

다.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기재)

자격사항	자격종목	자격증 번호	합격년월일	교부기관
어학능력	시험명	점수/만점	시험일자	시행처
수상실적	대회명	수상내용	수상일자	수여기관
연구실적 등	제 목 (연구자/저자)	발행(발표) 연월일	발표논문지 / 발표대회 / 출판사	
기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1. 학력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순 (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2. 경력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에 한하여 작성(최근 경력부터 기재)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서류(경력(재직)증명서) 첨부. 증빙서류 첨부되지 않은 경우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② 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담당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⑤ 증빙자료란에 첨부한 증빙자료명을 기재

예시) 경력증명서 등

3. 자격사항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취득(예정)일 ·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4. 어학능력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5. 기타 :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련분야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사안) ※ 증빙자료 첨부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자기 소개서

응시한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작성요령 (제출 시 해당부분 삭제)

-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글자체】휴먼명조 / 【글자크기】 13포인트 / 【글자색】 검정색 / 【줄간격】 160

※ 서명은 자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 중에 출신학교명과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2026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개방형직위(감사실장) 임용시험』 자격 기준과 관련 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확인과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한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검증에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감사실장(개방형직위) 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병역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총무과 및 미추홀구인사위원회
2. 이용사무(이용목적): 개방형직위 신규임용을 위한 경력경쟁임용시험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역사항 포함)
2	결격사유 유무조회 및 범죄경력 유무조회
3	장애인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26년 월 일

[illegible]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자격요건 괄호에 표시하여 제출 <중복표시 가능>

자 격 요 건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위'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다만, 위'2호'해당자는 제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7, 별표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
③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성 명 :

(서명 또는 인)